

전주지방법원 2019. 9. 19 선고 2018가단24129, 2019가단4658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토지인도 등 ·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독립당사자참가인 1. G

2. H

3. I

독립당사자참가인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B

4. B

변론 종결 2019. 7. 11.

판결 선고 2019. 9. 19.

주 문

1.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 김제시 J 묘지 1686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, 18, 19, 20, 4, 17의

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1㎡ 지상 건축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담장을 각 철거하고, 위 (가)부분 21㎡를 인도하고, 41,486원 및 2019. 2. 27.부터 위 (가)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.
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[본소]

주문 제2항 및 피고 C은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2 표시 1, 2, 3, 17, 18, 19,33, 3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차)부분 990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21,22, 2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350㎡, 같은 도면 표시 24, 25, 26,27, 28, 17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자)부분 7㎡, 같은 도면 표시 29, 30,31, 32,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2㎡, 같은 도면 표시 31, 32, 33,34,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사)부분 4㎡, 같은 도면 표시 35, 36, 37, 38,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아)부분 1㎡를 각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.[독립당사자참가의 소]

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각 12,292원 및 2019. 2. 27.부터 김제시 J 묘지1686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, 18, 19, 20, 4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1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김제시 J 묘지 168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망 K의 소유였는데, 망 K은 2012. 6. 1. 사망하였고, 현재 그 배우자인 원고가 27/75 지분, 망 K의 자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(이하 '참가인들'이라 한다) 및 L, M이 각 8/75 지분을 상속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제시 N 대 181㎡ 및 그 지상 건물은 망 O의 소유였는데, 망 O이 2001년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, E, F이 이를 상속하였다.

다. 망 O은 1998년경 위 나. 항 기재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, 18, 19, 20, 4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1㎡(이하 '(가)부분'이라 한다)를 침범하였고,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위 건물의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.

라. 한편, 피고 C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[별지 참고도2 표시 1, 2, 3, 17, 18, 19, 33, 3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차)부분, 이하 '(차)부분'이라 한다]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2016년 가을경 원고 및 참가인들과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4, 6, 11, 13 내지 28, 3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참가인들의 주장

참가인들은 망 K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8/7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들은 2008. 9. 27.부터 (가)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임료상당액중 참가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- 1)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
- 2)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

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,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,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(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221784 판결 등 참조).

3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참가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이에 따른 상속지분은 원고 27/75, 참가인들 각 8/75인데, 참가인들은 원고가 본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 자신의 상속지분인 각 8/75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,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.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.

4)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3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망 O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(가)부분에 건물을 지어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(가)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 2008. 9. 27.부터 (가)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임료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또한, 피고 C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(차)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해당 부분의 시멘트포장, 나무뿌리, 비닐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, 이를 모두 제거하여 원상회복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피고들에 대한 건물 철거,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O은 이 사건 토지 중 (가)부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였고, 현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(가)부분을인도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망 O이 망 K으로부터 (가)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,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(가)부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을 사용·수익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의무가 있는바,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중(가)부분의 임료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8. 9. 27.부터 2019. 2. 26.까지 합계 115,240원[= 2008. 9. 27.부터 2018. 9. 26.까지 합계 107,690원+ 2018. 9. 27.부터 2019. 2. 26.까지 합계 7,550원(월 1,510원)]인 사실이 인정되고, 그이후의 임료 역시 월 1,51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 위임료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41,486원(= 115,240원 × 27/75, 원 미만 버림, 이하같다) 및 2019. 2. 27.부터 (가)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3원(= 1,510원 × 27/75)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피고 C이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(차)부분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별지 참고도2 표시 (마)부분 350㎡에 비닐들, 같은 도면 표시 (자)부분 7㎡에 시멘트포장, 같은 도면 표시 (바)부분 2㎡에 감나무 밑과 뿌리들, 같은 도면 표시 (사)부분 4㎡에 자른 나무들, 같은 도면 표시 (아)부분 1㎡에 밤나무 밑과 뿌리를 제거하지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. 살피건대, 피고 C이 2016년경까지 위 (차)부분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각 부분에 원고 주장의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부분에 위와 같은 물건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C이

임대차종료 후 위 물건들을 해당 부분에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참가인들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인혜

※ 첨부서류 10). 참고 도 (부속, 2018.12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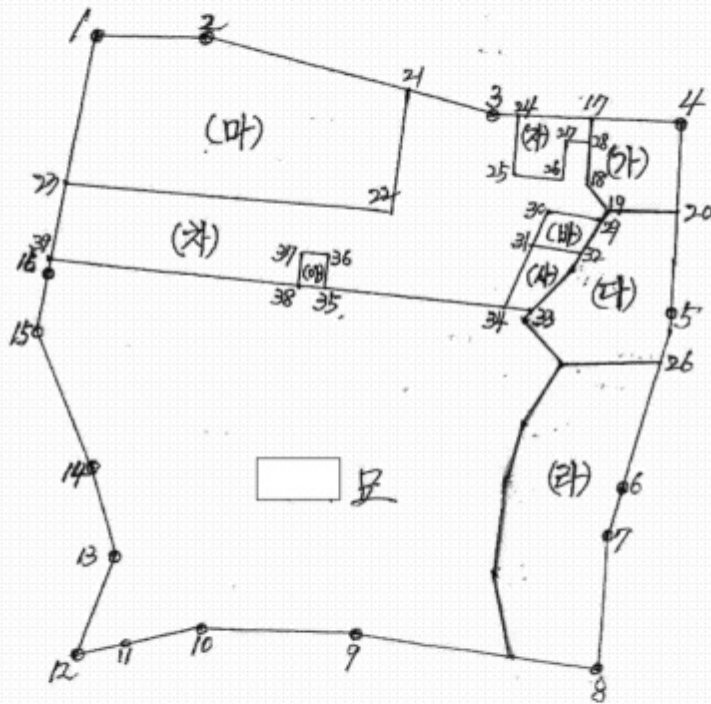
도지 소지 [] 김제시 [] 외

상	명
○	경계점 표지
—	지 역 선
—	원고측 지경선

지	지	지	기	면	비
번	역	장	호	적	고
		면적(m ²)			
[]	묘지	1665	1,2,3,17,18,19,20,5,6,7,8,9,10,11,12,13,14,15,16,1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	1665	
(가)	묘지		17,18,19,20,4,17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	21	

비고 * 본 감정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첨부서류 2. 참고도 2 (관계)



○ 경계점 표시

※ 편의상 확대한 그림임.